|  |  |  |
| --- | --- | --- |
| **오락장소 관리방법**문화부령 제55호 <오락장소 관리방법>은 2013년 1월 25일 문화부 부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발표하는 바,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차이우(蔡武)2013년 2월 4일**제1조** 오락장소 경영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오락장소의 건전한 발전을 보호하며, 대중의 문화오락 소비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오락장소 관리조례>(이하 “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조례>에서 오락장소라 칭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스스로 춤과 노래,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뜻한다. 가무(歌舞) 오락장소는 반주음악, 노래선곡 서비스 또는 댄스음악, 댄스 스테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장소를 가리킨다. 레크레이션 오락장소는 오락 레크레이션 설비를 통해 오락 레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장소를 가리킨다. 기타 장소에서 상기 오락서비스를 겸영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는 오락장소가 민족의 우수한 문화예술 전파하고 대중을 만족시키는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오락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오락장소가 프랜차이즈 경영 및 브랜드 경영을 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문화주관부문은 소재지 오락장소 경영활동의 감독관리와 오락장소가 제공하는 문화상품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또한 소재지 오락장소 업종협회 업무에 책임을 진다. **제5조** 오락장소 업종협회는 국가의 유관 법규와 협회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업종 규범을 제정하고 업종 자율을 강화하며, 업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6조** 오락장소는 아래의 장소에 설립할 수 없다. (1) 건물용도 중 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물 내 (2) 박물관, 도서관과 문물보호단위로 심사결정된 건축물 내(3) 주민 주택구역 (4) 교육법 규정의 초중고교 주변 (5) <의료기구 관리조례>및 실시세칙 규정에 의거하여 <의료기구 업무수행 허가증>을 취득한 병원 주변(6) 각급 중국 공산당 위원회 및 그 소속의 각 업무부문, 각급 인민대표대회 기관, 각급 인민정부 및 그 소속의 각 업무부문, 각급 정치협상회의 기관, 각급 인민법원, 감찰원 기관, 각급 민주정당 기관 주변 (7) 정류장, 공항 등 인파밀집 장소(8) 건축물 지하 1층 이하(지하1층 불포함)(9) 위험화학품 창고와 인접한 지역, 위험화학품 창고와의 거리는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의 유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오락장소와 학교, 병원, 기관과의 거리 및 그 측량방법은 성급 인민정부 문화 주관부문이 규정한다. **제7조** 오락장소의 설립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경영활동과 상응하는 시설설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문화상품 내용은 문화상품 생산, 출판, 수입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 가무 오락장소의 소비자 사용면적은 1인당 1.5m2(농촌지역 제외)이상이어야 하며, 레크레이션 오락장소의 사용면적은 200m2 이상이어야 한다. 사용면적은 사무구역, 창고구역 등 비영업성 구역을 포함하지 않는다. (3) 국가치안관리, 소방안전, 환경소음 등 유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 법률, 법규와 규장이 규정한 기타 조건 **제8조**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은 농촌지역의 오락장소 설립에 대한 최저 사용면적 표준 제정을 책임진다. 현지의 실제상황을 감안, 해당 행정구역 내의 오락장소 최저 사용면적, 소비자 수의 심사결정하여 표준을 제정한다. 단 본 방법 제7조 제(2)항 규정의 표준보다 낮을 수 없다.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본 행정구역 내의 레크레이션 오락장소 총량과 배치 규획을 제정하고 사회에 공포한다. **제9조** 오락장소 설립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문화 주관부문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오락장소 설립은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 문화 주관부문은 소재지 현급이상 문화 주관부문에 위탁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오락장소 설립 신청 전, 설립인은 심사비준을 책임지는 문화주관부문에 설립자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주관부문은 설립인에게 행정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오락장소 설립신청은 아래의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신청서(2) 기업명칭 예비심사비준 통지서 또는 영업집조 (3) 조직기구와 정관(4) 투자인, 예비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인의 신분증명 및 <조례> 제4조, 제5조, 제52조 규정의 정황이 없는 서면 성명문(声明)(5) 부동산 등기증서, 장소를 임대하여 경영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의향서 (6) 경영장소 지리위치도 (7) 장소 내부구조 평면도, 가무오락장소는 룸(room), 박스(box) 면적과 위치를 명시해야 하며, 레크레이션 오락장소는 오락과 레크레이션 분리구역 경영 위치, 오락 레크레이션 설비수량 및 위치를 명시해야 한다. (8) 소방, 환경보호부문의 비준문건 중외합자, 중외합작 오락장소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상무주관부문의 비준문건도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문화주관부문은 신청을 수리한 후, 설립장소의 위치, 주변환경, 면적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설립장소 및 문화주관부문의 사무장소에 눈에 잘 띄는 위치에 10일간 사회에 공시하고 법에 의거하여 의견청취를 조직한다. **제13조** 문화주관부문은 가무오락장소를 사용하는 음악선곡 시스템과 레크레이션 오락장소를 사용하는 오락 레크레이션 설비에 대해 내용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4조** 문화주관부문은 의견청취와 문화상품 내용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하는 경우, 오락경영 허가증을 심사발급한다. 비준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5조** 오락장소의 리모델링, 영업장소 확장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와 투자인원, 투자비율 및 오락경영허가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증서발급 기관에 오락경영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16조** 가무오락장소가 음악선곡 시스템을 신규증설, 변경하는 경우와 레크레이션 장소가 오락 레크레이션 설비를 신규증설, 변경하는 경우, 증서 발급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오락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오락경영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오락장소 경영자가 허가증, 공상엽업집조 부본 및 영업정황 보고서를 기존 증서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허가증의 교환발급을 신청한다. 기존 증서발급 기관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설립조건에 따라 연장비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연장을 비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오락경영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하지 않은 경우, 기존 증서발급 기관이 오락경영허가증 말소를 사회에 공고하고, 공안기관 및 공상행정관리부문에 통지한다. **제19조** 오락장소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는 해당 장소 경영질서를 보호하는 제1 책임자이다. **제20조** 가무오락장소 경영은 아래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방영(상영), 상연하는 프로그램은 <조례> 제13조 금지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2) 장소에서 사용하는 음악선곡 시스템은 경외 음악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될 수 없다. (3) 독단적으로 장소에서 사용하는 음악선곡 시스템을 변경할 수 없다. **제21조** 레크레이션 오락장소의 경영은 아래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문화주관부문의 내용 심사를 거치지 않은 오락 레크레이션 설비 (2) 경품이 있는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경품 목록은 소재지 현근 문화주관부문에 비안해야 한다. (3) 독단적으로 오락 레크레이션 설비를 변경할 수 없다. (4) 오락, 레크레이션 분리구역 경영을 시행하는 경우, 명확한 구역 분리 표식이 있어야 한다. (5) 국가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미성년자가 레크레이션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 **제22조** 오락장소는 문화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영업성 연출활동에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 오락장소가 연출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영업성 연출 관리조례> 및 <영업성 연출 관리조례 실시세칙>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23조** 오락장소는 문화상품 내용심사와 감시제도를 건립하고, 담당자가 장소 내에서 제공하는 문화상품과 서비스를 책임관리 하도록 한다. 감시정황은 영업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소비자가 오락장소를 이용하여 위법, 법규위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오락장소는 제지해야 하며, 제지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문화주관부문 또는 공안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오락장소는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오락경영허가증, 미성년자 진입금지 또는 제한진입표식을 걸어야 하며, 표식에 “12318” 문화시장 제보전화를 명기해야 한다. **제25조** 오락장소는 문화주관부문의 일상검사와 기술 감독관리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제26조** 문화주관부문은 오락장소 신용관리 당안을 건립하고, 문화주관부문, 공안기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처벌을 받은 오락장소의 정황 및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투자자 등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제27조** 문화주관부문은 정기적으로 문화주관부문의 업무인원, 오락장소의 제1 책임자와 내용관리 전문인원에게 정책법규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제28조**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독단적으로 오락장소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문, 문화주관부문이 <조례> 제40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29조** 가무 오락장소가 본 방법 제20조 제(1),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조례> 제47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본 방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조례> 제48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제30조** 레크레이션 오락장소가 본 방법 제21조 제(1), (2)항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책임지고 개정을 명령하며, 5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방법 제21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조례> 제48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본 방법 제21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조례> 제50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본 방법 제21조 제(5)항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조례> 제47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31조** 오락장소가 본 방법 제22조 제1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책임지고 개정을 명령하며, 5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제32조** 오락장소가 본 방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조례> 제49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제33조** 오락장소가 본 방법 제24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책임지고 개정을 명령하며, 경고한다.**제34조** 오락장소가 본 방법 제25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경고하고, 5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제35조** 본 방법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 **娱乐场所管理办法**文化部令第55号 　　《娱乐场所管理办法》已于2013年1月25日经文化部部务会议审议通过，现予发布，自2013年3月11日起施行。 　　　　　　　　　　　　　　　　　　　　　　　　　　 　 部长 　蔡　武 　　　　　　　　　　　　　　　　　　　　　　　　　　　 　 　2013年2月4日 　　**第一条**　为了加强娱乐场所经营活动管理，维护娱乐场所健康发展，满足人民群众文化娱乐消费需求，根据《娱乐场所管理条例》（以下简称《条例》），制定本办法。 　 **第二条**　《条例》所称娱乐场所，是指以营利为目的，向公众开放、消费者自娱自乐的歌舞、游艺等场所。歌舞娱乐场所是指提供伴奏音乐、歌曲点播服务或者提供舞蹈音乐、跳舞场地服务的经营场所；游艺娱乐场所是指通过游戏游艺设备提供游戏游艺服务的经营场所。 　 其他场所兼营以上娱乐服务的，适用本办法。 　 **第三条**　国家鼓励娱乐场所传播民族优秀文化艺术，提供面向大众的、健康有益的文化娱乐内容和服务；鼓励娱乐场所实行连锁化、品牌化经营。 　 **第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负责所在地娱乐场所经营活动的监管，负责娱乐场所提供的文化产品的内容监管，负责指导所在地娱乐场所行业协会工作。 　 **第五条**　娱乐场所行业协会应当依照国家有关法规和协会章程的规定，制定行业规范，加强行业自律，维护行业合法权益。 　 **第六条**　娱乐场所不得设立在下列地点： 　 （一）房屋用途中含有住宅的建筑内； 　 （二）博物馆、图书馆和被核定为文物保护单位的建筑物内； 　 （三）居民住宅区； 　 （四）教育法规定的中小学校周围； 　 （五）依照《医疗机构管理条例》及实施细则规定取得《医疗机构执业许可证》的医院周围； 　 （六）各级中国共产党委员会及其所属各工作部门、各级人民代表大会机关、各级人民政府及其所属各工作部门、各级政治协商会议机关、各级人民法院、检察院机关、各级民主党派机关周围； 　 （七）车站、机场等人群密集的场所； 　 （八）建筑物地下一层以下（不含地下一层）； 　 （九）与危险化学品仓库毗连的区域，与危险化学品仓库的距离必须符合《危险化学品安全管理条例》的有关规定。 　 娱乐场所与学校、医院、机关距离及其测量方法由省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规定。 　 **第七条**　设立娱乐场所，应当符合以下条件： 　 （一）有与其经营活动相适应的设施设备，提供的文化产品内容应当符合文化产品生产、出版、进口的规定； 　 （二）歌舞娱乐场所消费者人均占有使用面积不得低于1.5平方米（农村地区除外），游艺娱乐场所的使用面积不少于200平方米，使用面积不包括办公、仓储等非营业性区域； 　 （三）符合国家治安管理、消防安全、环境噪声等相关规定； 　 （四）法律、法规和规章规定的其他条件。 　 **第八条**　省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负责制定农村地区设立娱乐场所最低使用面积标准；结合本地区实际，制定本行政区域内娱乐场所最低使用面积、消费者数量的核定标准，但不得低于本办法第七条第（二）项规定的标准。 　 省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负责制定本行政区域内游艺娱乐场所总量与布局规划，并向社会公布。 　 **第九条**　设立娱乐场所，应当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提出申请；设立中外合资经营、中外合作经营娱乐场所，应当向所在地省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提出申请，省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可以委托所在地县级以上文化主管部门进行实地检查。 　 **第十条**　申请设立娱乐场所前，筹建人可以向负责审批的文化主管部门提交筹建咨询申请，文化主管部门应当为筹建人提供行政指导。 　 **第十一条**　申请设立娱乐场所，应当提交以下文件： 　 （一）设立申请书； 　 （二）企业名称预先核准通知书或者营业执照； 　 （三）组织机构和章程； 　 （四）投资人、拟任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的身份证明以及无《条例》第四条、第五条、第五十二条规定情况的书面声明； 　 （五）房产权属证书，租赁场地经营的，还应当提交租赁合同或者租赁意向书； 　 （六）经营场所地理位置图； 　 （七）场所内部结构平面图，歌舞娱乐场所应当标明包厢、包间面积及位置，游艺娱乐场所应当标明游戏和游艺分区经营位置、游戏游艺设备数量及位置； 　 （八）消防、环境保护部门的批准文件； 　 申请设立中外合资、中外合作经营娱乐场所的，还应当提交商务主管部门的批准文件。 　 **第十二条**　文化主管部门受理申请后，应当对设立场所的位置、周边环境、面积等进行实地检查。符合条件的，应当在设立场所、文化主管部门办公场所显著位置向社会公示10日，并依法组织听证。 　 **第十三条**　文化主管部门应当对歌舞娱乐场所使用的歌曲点播系统和游艺娱乐场所使用的游戏游艺设备进行内容核查。 　 **第十四条**　文化主管部门应当根据听证和文化产品内容核查结果作出行政许可决定。予以批准的，核发娱乐经营许可证；不予批准的，应当书面告知申请人并说明理由。 　 **第十五条**　娱乐场所改建、扩建营业场所或者变更场地的，变更投资人员、投资比例以及娱乐经营许可证载明事项的，应当向原发证机关申请重新核发娱乐经营许可证。 　 **第十六条**　歌舞娱乐场所新增、变更歌曲点播系统，游艺娱乐场所新增、变更游戏游艺设备的，应当报原发证机关核查。 　 **第十七条**　娱乐经营许可证有效期2年。娱乐经营许可证有效期届满30日前，娱乐场所经营者应当持许可证、工商营业执照副本以及营业情况报告到原发证机关申请换发许可证。原发证机关应当在有效期届满前按照设立条件做出是否准予延续的决定，逾期未做决定的，视为准予延续。 　 **第十八条**　娱乐经营许可证有效期届满未延续的，由原发证机关向社会公告注销娱乐经营许可证，并函告公安机关、工商行政管理部门。 　 **第十九条**　娱乐场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是维护本场所经营秩序的第一责任人。 　 **第二十条**　歌舞娱乐场所经营应当符合以下规定： 　 （一）播放、表演的节目不得含有《条例》第十三条禁止内容； 　 （二）不得将场所使用的歌曲点播系统连接至境外曲库； 　 （三）不得擅自变更场所使用的歌曲点播系统。 　 **第二十一条**　游艺娱乐场所经营应当符合以下规定： 　 （一）不得设置未经文化主管部门内容核查的游戏游艺设备； 　 （二）进行有奖经营活动的，奖品目录应当报所在地县级文化主管部门备案； 　 （三）不得擅自变更游戏游艺设备； 　 （四）实行游戏、游艺分区经营，并有明显的分区标志； 　 （五）除国家法定节假日外，禁止未成年人进入游戏区。 　 **第二十二条**　娱乐场所不得为未经文化主管部门批准的营业性演出活动提供场地。 　 娱乐场所招用外国人从事演出活动的，应当符合《营业性演出管理条例》及《营业性演出管理条例实施细则》的规定。 　 **第二十三条**　娱乐场所应当建立文化产品内容自审和巡查制度，确定专人负责管理在场所内提供的文化产品和服务。巡查情况应当记入营业日志。 　 消费者利用娱乐场所从事违法违规活动的，娱乐场所应当制止，制止无效的应当及时报告文化主管部门或者公安机关。 　 **第二十四条**　娱乐场所应当在显著位置悬挂娱乐经营许可证、未成年人禁入或者限入标志，标志应当注明“12318”文化市场举报电话。 　 **第二十五条**　娱乐场所应当配合文化主管部门的日常检查和技术监管措施。 　 **第二十六条**　文化主管部门应当建立娱乐场所信用管理档案，记录被文化主管部门、公安机关、工商行政管理部门实施处罚的情况以及娱乐场所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投资人等信息。 　 **第二十七条**　文化主管部门应当定期组织文化主管部门工作人员、娱乐场所第一责任人和内容管理专职人员进行政策法规培训。 　 **第二十八条**　违反《条例》规定，擅自从事娱乐场所经营活动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工商行政管理部门、文化主管部门依照《条例》第四十条予以处罚。 　 **第二十九条**　歌舞娱乐场所违反本办法第二十条第（一）、（二）项规定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依照《条例》第四十七条予以处罚；违反本办法第二十条第（三）项规定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依照《条例》第四十八条予以处罚。 　 **第三十条**　游艺娱乐场所违反本办法第二十一条第（一）、（二）项规定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责令改正，并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违反本办法第二十一条第（三）项规定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依照《条例》第四十八条予以处罚；违反本办法第二十一条第（四）项规定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依照《条例》第五十条予以处罚；违反本办法第二十一条第（五）项规定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依照《条例》第四十七条予以处罚。 　 **第三十一条**　娱乐场所违反本办法第二十二条第一款规定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责令改正，并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 　 **第三十二条**　娱乐场所违反本办法第二十三条规定对违法违规行为未及时采取措施制止并依法报告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依照《条例》第四十九条予以处罚。 　 **第三十三条**　娱乐场所违反本办法第二十四条规定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责令改正，予以警告。 　 **第三十四条**　娱乐场所违反本办法第二十五条规定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予以警告，并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 　 **第三十五条**　本办法自2013年3月11日起施行。 |